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08.2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/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-1일원		
의결번호	2017-25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1동, 102동, 103동 필로티 공간이 벽식으로 폐쇄되어 있으므로 기둥식 등 범외 예방공간으로 계획하고, 외부공간과 연계되는 세부 활용 프로그램을 제시 바람.</li> <li>○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및 중간층에 거주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계획하기 바람.</li> <li>○ 어린이집, 경로당의 용도를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.</li> <li>○ 지하1층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과 탈의실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.</li> <li>○ 지하1층 주차장에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설치를 검토 바람.</li> <li>○ 썬큰의 구체적인 공간(활용)계획과 주차장과의 구획 여부를 재검토 바람.</li> <li>○ 썬큰에서 지상 수경시설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또는 계단 설치를 권장함.</li> <li>○ 유아놀이터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가까우므로 안전시설을 계획 바람.</li> <li>○ 공동주택 지하1층, 지하2층 주동출입구 부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일부 주차공간을 삭제하기 바람.</li> <li>○ 원활한 동선유도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조닝별 색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형태가 상이한 각 동별 구조안전성을 검토 바람.(101,102,103동)</li> <li>○ 특수전단벽 구조시스템 적용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상세계획을 보완 바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상1층 특별피난계획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수정하기 바람.</li> <li>○ 피트니스센터, 골프연습장 등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 내부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 08. 29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08.29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/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-1일원		
의결번호	2017-25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심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지 및 휴식·운동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.</li> <li>○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, 가로변 녹음 식재는 간격 6m이하로 식재하여 연속된 녹음 터널을 조성 바람.</li> <li>○ 자전거보관소를 충분히 설치하고 분산배치하기 바람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색건축인증적용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바람.</li> <li>○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위한 건축 공간 및 구체적인 관리시스템을 제시 바람.</li> </ul> <p>&lt; 공통사항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</li> <li>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이상</li> <li>다.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49.63kWh/m<sup>2</sup>·y(공동주택), 183.32kWh/m<sup>2</sup>·y(부대시설)</li> <li>- 258.22kWh/m<sup>2</sup>·y(근린생활시설)</li> </ul> </li> <li>라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: 공동주택 4%, 지식센터 9%</li> </ul> </li> <li>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</li> <li>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</li> <li>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대지면적 1,000m<sup>2</sup>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m<sup>2</sup>이상의 건축물.</li> <li>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</li> </ol> </li> <li>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</li> </ol>			

2017. 08. 29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